

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6.9.10.)에서
의결된 「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
같이 공포합니다.

2026년 9월 15일

양구군의회 의장 김 정 미



양구군의회 규칙 제31호

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양구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양구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에”를 “양구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”로,
“의회의원”을 “양구군의회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회의장”을 “양구군의회의원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본회에”를 “본회의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